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8일, 서영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석의원)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 · 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5년마다 소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여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화장품 관련 정책을 상시적으로 종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정책수단을 연계하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79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동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관리기본계획’ 및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와 그 성격·기능이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화장품관리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명칭을 화장품관리협의회로 변경하면서 그 소속과 의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화장품관리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명칭을 화장품관리협의회로 변경하면서 그 소속과 의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4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으로, “안전·품질”을 “안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 제출하여야”를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항)제1호 중 “안전·품질”을 “안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을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품질”을 “안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을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품질”을 “안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을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품질”을 “안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의”를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화장품관리협의회”로, “거처 연도별”을 “거처 매년 연도별”로,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수립·시행하기”로, “기관 및”을 “기관이나”로, “제공 등을”을 “제출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한”을 “정당한”으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 제2조의5의 제목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화장품관리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품질”을 “안전”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업무를”을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 강화협의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무조정실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장품과 관련하여 학계

· 연구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화장품 관련”을 “화장품”으로, “풍부한 사람”을 “풍부한 학계·연구기관·단체·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협의회”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로, “간사 2명을 둔다”를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허가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2조의4(화장품관리 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화 장품 안전·품질 관 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 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조의4(화장품관리 기본계획) ① <u>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u> ----- <u>--안전-----</u> <u>---규제 지원 및</u> <u>국제협력(제33조</u> <u>의2에 따른 국제</u> <u>협력을 말한다. 이</u> <u>하 이 조 및 제2조</u> <u>의5에서 같다) 등</u> <u>을 위하여 제2조</u> <u>의5에 따른 화장</u> <u>품 관리협회의</u> <u>협의를 조정</u> <u>을</u> <u>고쳐</u> <u>5년마다 화장품관</u> <u>리기본계획(이하</u> <u>“기본계획”이라 한</u> <u>다)을 수립·시행</u> <u>하여야-----.</u> <u>수립</u> <u>된 기본계획을 변</u> <u>경(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경미한 사</u>

항의 변경은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삭 제>

② 국무총리는 제1
항에 따라 제출받
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화장품 안
전·품질 관리, 경
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
을 종합하여 제2조
의5에 따른 화장품
경쟁력강화협의회
의 협의·조정을
거쳐 화장품관리기
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
다. 수립된 기본계
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

	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u>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u>	1. ----- <u>안전</u> ----- ----- <u>규 제</u> <u>지원 및 국제협</u> <u>력 등을 위한</u> ----
	2. <u>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u>	2. ----- <u>안전</u> ----- ----- <u>규 제</u> <u>지원 및 국제협</u> <u>력 등을 위한</u> ----
	3. <u>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u>	3. ----- <u>안전</u> ----- ----- <u>규 제</u> <u>지원 및 국제협</u> <u>력 등을 위한</u> ----
	4. <u>그 밖에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의 체계적 ·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4. ----- <u>안전</u> ----- <u>규제 지원 및 국</u> <u>제협력 등을 위</u> <u>한 사업의</u>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경쟁력강화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illegible]

④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_____

_____ 수립 .

시행하기 _____

_____ 기관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
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경쟁
력강화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업무
를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화장
품경쟁력강화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나
제출을
정당한

⑤ (개정안 제6항
과 같음)

제2조의5(화장품관리
협의회) ① -----
-----안전-----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하기-----식품의
약품안전처에 화
장품관리협의회--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u>시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4. 화장품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 국내외 화장품 인허가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 협력 등에 관한</u>

<신 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
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추
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국
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
력 등을 위한 관
계 기관 및 단체
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
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를·조정이 필
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
과 관련하여 관
계 기관 및 단체
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삭 제>

② (개정안 제3항
과 같음)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회의 의장
은 국무조정실장으
로 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으
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앙행정기
관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
원으로서 해당 기
관의 장이 지정하
는 사람

2. 화장품과 관련
하여 학계·연구
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③ -----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 <후단
삭제>

1. (개정안과 같음)

2. 화장품-----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
서 의장이 위촉하
는 사람

-----풍
부한 학계·연구
기관·단체·산
업계 등에 종사
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
우 간사는 국무조
정실 및 식품의약
품안전처 소속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회의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
여 협의회--간사
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지명한
다. <후단 삭제>

⑥ 협회의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협
의회에 다음 각 호
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

-----분과위원회-----
-----.

1. 화장품 안전·
품질 분과위원회
2. 화장품 산업 육
성 분과위원회

<삭 제>

<삭 제>

	<u>3. 화장품 수출 지</u> <u>원 분과위원회</u> <u>⑦ 협의회와 제6항</u> <u>에 따른 분과위원</u> <u>회의 구성 및 운영</u> <u>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u><삭 제></u> <u>⑥ -----제5항-</u> ----- ----- ----- ----- -----.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

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기관·단체·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u> <u>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u> <u>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u> <u>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u>

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
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매년 연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
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
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
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
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
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
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기관·단체·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u>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 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